

제 호

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서

1.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명칭:
2.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대표자:
3.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소재지: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22조의4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.

일 년 월

문화재청장 직인